



국민연금 대납자 소득공제 법안의 시사점

최장훈 연구위원

요약

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대납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임. 이러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,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적연금시장은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, 사적연금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혜택 확대, 그리고 새로운 세수 확보 및 정부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임.

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대납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.

-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음.
 -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로서, 기초수급자,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,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 등임.
- 최근 20대 국회에서 임의가입자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」을 발의하였음.

■ 이러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음.

- 특히, 임의가입자의 약 80%가 여성이므로, 전업주부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%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남편의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같이 살기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임.

■ 그러나 동 방안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논란과 사적연금시장의 축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.

-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형평성 논란을 유발시킬 수 있음.
 -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경우 임의가입자의 최소 월 납입보험료인 89,100원에 과세표준 세율 15%(24%)를 적용하더라도 1인당 연 16만 원(26만 원)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.¹⁾
 -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연 16만 원(26만 원)의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음.
- 또한, 사적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환으로 사적연금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.
 -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·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가입자 소득공제 법안은 사적연금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.
 - 사적연금 가입자의 감소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동 법안의 목적을 퇴색시킬 것으로 판단됨.

■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동 법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, 사적연금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혜택 확대, 그리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임.

- 동 방안은 근로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.
 - 예를 들어, 저소득층을 위해 동 법안에 소득공제와 보험료 지원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료 지원금 선택권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.
- 사적연금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연금계좌의 연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.
- 정부 세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세수 확보와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임.
 -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층의 감소로 정부 재정지출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장·단기적 입장에서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. **kiri**

1)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짐. 2015년 3월 기준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최저 8만 9,100원에서 최고 36만 7,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.